

일제의 한국병합정책에 대한 연구

鄭 鎮 午*

〈 目 次 〉

- I. 서론
- II. 보호조약체결
- III. 통감정치
- IV. 일제의 만주침략과 러·일협상
- V. 병합
- VI. 결론

I. 서론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 이래 한국을 침략·병합하려는 계획을 용의 주도하게 수립. 특히 국제정세를 교묘히 이용하여 청일전쟁(1894년)과 러·일전쟁(1905년)을 거쳐 한국을 식민지화 하였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러·일·영 등 강대국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제정세에 어두운 동안에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려는 계획을 추진해왔던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병합정책과 당시의 국내외 정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보호조약체결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화할 계획을 처음 세운 것은 러·일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결정한 '러시아와의 교섭이 결렬할 경우 일본이 취할 청나라 및 한국에 대한 방침'(1903. 12. 30)에서였다.

이 '방침'에서 한국과 공수동맹이나 보호협약을 체결할 것을 결정한 일본은 그것을

* 濟州大學校 法政大學 政治外交學科 教授

처음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한일의정서'(1904. 2. 23)에서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신하고 시설의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는 조항을 제일 먼저 넣었다.

여기에서의 '시설개선'에 관한 충고는 한국의 보호국화를 위한 일본측의 요구를 말하며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한(對韓)시설강령'을 결정했다.(1904. 5. 31)¹⁾ 그리하여 러·일전쟁에 있어서 전황이 우세하게 되자 1905년 4월 8일 내각회의에서 한국에서의 보호권확립에 관한 방침을 확정하였다. 여기에는 그들이 한국의 대외관계를 대행함과 아울러, 한국정부의 내정을 감독하고 在韓 일본인의 보호를 맡을 주차관(駐節官)을 파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미 추진해오고 있던 보호국화방침을 거듭 확인한 것이지만 한가지 특기할만한 사항은 한국의 내정감독 곧 보호통치를 주관할 주차관의 파견에 대한 구상을 처음으로 드러내 보인 점이었다.²⁾

이어 1905년 10월 16일 포오츠머드회담에서 돌아온 小村외상은 즉시 桂수상과 林權助주한 공사와 한국의 보호조약에 관한 숙의를 하고 다음날인 10월 17일 어전회의에서 러·일 강화조약의 규정을 현실화하는 순서로서 첫째 청국으로 하여금 우리의 만주 경영의 방침을 승인토록 하는 교섭과 둘째로 한국을 일본의 보호하에 두는 협약을 체결하는 방침이 결정되어, 이 두가지 중대 임무를 수행키 위해 한국에는 伊藤이 파견되고 청국에는 小村외상이 교섭에 나서기로 했던 것이다.³⁾

그리고 11월 2일 먼저 서울에 귀임한 주청 일본공사 林權助는 長谷川好道 주차사령관과 협의하여 伊藤이 도착하는 즉시 체결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몇가지 사전준비를 하였다. 즉 몇몇 원로대신들을 조종해 간접적으로 고종의 의사를 타진하는 한편 이완용을 비롯하여 조약체결에 찬성할 대신들을 매수해 두었다. 아울러 친일단체인 일진회로 하여금 보호조약체결을 지지하는 선언서를 발표하여 여론을 조작하도록 지시하였다.⁴⁾

1905년 11월 10일 천황의 특파대사로서 "한국황실위문"이라는 명목으로 입경한 伊藤은 다음날인 11월 11일 고종황제를 알현하고 한일관계는 러·일 강화 성립후 일층 친밀을 기해야 할 사정임을 장황하게 설명하였다.

한국정부로서는 영일동맹조약에서나 포오츠머드 강화조약에 한국의 보호국화를 위한 조항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본이 불원 또 다시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리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伊藤의 입경을 경계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⁵⁾. 伊藤은 15일의 두번째 면담에서 보호조약 초안을 제시하고 이를 수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근경에 처한 고종은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관료들의 의견을 묻고 백성들의

1) 강만길,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1985, p.208.

2) 「日本外交文書」 38-1, pp.519~520.

3) 류수현, 한국근대정치사, 정음사, 1984, p.201.

4) 한국사, 11, 한길사, 1994, p.202.

5) Ibid., p.201.

뜻도 살피야겠다고 하여 일단 승락을 거부하였다. 이에 伊藤은 정부대신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전제군주국가의 국왕이 백성들의 뜻을 살피겠다는 것은 인민을 선동하여 일본에 저항하려는 저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위협하였다.

伊藤의 항의에 따라 결국 민의를 살핀다는 부분은 기각되고 대신들의 의견을 묻는다는데로 양해가 이루어졌다.⁶⁾

이틀뒤인 11월 17일 각료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장소인 궁궐을 무장한 일본헌병들이 삼엄한 경비를 펴 미리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 더욱이 한국정부의 대신 회의임에 불구하고 林權助공사와 長谷川好道사령관을 대동한 伊藤이 참석하여 이를 주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伊藤은 대신들 개개인을 호명해가며 즉석에서 가부를 묻는 방식으로 동의를 강요하였다. 강경한 태도로 반대의 뜻을 표했던 참정대신 한규설이 헌병들에게 끌려나가 감금당한 가운데 탁지부대신 민영기와 법무대신 이하영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일본에 매수당해 있던 학무대신 이완용을 비롯하여 외무대신 박제순, 내무대신 이지용, 군무대신 이근택, 농상공무대신 권준현은 부분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伊藤은 8명의 대신 가운데 5명이 찬성하였으므로 보호조약이 통과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회의를 종결시켰다.⁷⁾

이처럼 극히 변칙적인 방법으로 체결된 한일협상조약,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정부 및 일본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主義)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부강지실(富強之實)을 인정하기에 이르기까지 이 목적을 위하여 다음 조관(條款)을 약정함.

제1조 일본정부는 동경에 있는 외무성을 거쳐 이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監理)·지휘함이 가(可)하며, 일본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과 이익을 보호함.

제2조 일본정부는 한국과 타국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책임을 지고 한국정부는 이후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갖는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

제3조 일본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폐하 아래에 한 명의 통감(統監)을 두되, 통감은 오직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京城)에 주재하고 직접 한국 황제폐하에게 내알(內謁)하는 권리를 가짐. 일본정부는 또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기타 일본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理事官)을 두는 권리를 갖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 종래 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 직권을 집행하고 더불어 본

6) 강재언 「한국근대사연구」 한밭, 1982. pp.252~253.

7) 이선근, 「한국사-현대편」, 을유문화사, 1963. pp.920~923.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일체 사무를 관장함.

제4조 일본국과 한국간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의 조관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효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함.

제5조 일본정부는 한국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것을 보증함.⁸⁾

이는 일본이 원래 마련했던 초안에 약간의 수정과 첨삭이 가해진 것이었다. 예를 들면 서문중 원안에는 없었던 한국의 부강지실을 인정할 때 까지라는 막연하나마 한 시적인 뜻을 갖는 구절을 넣은 것이나, 역시 원안에 없던 제5조의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보장한다는 항목을 추가한 것 등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었으며 단지 매국대신들의 체면치레를 위한 눈가림용에 불과하였다.⁹⁾

또한 이상의 경과에서 보듯이 이 을사보호조약은 한마디로 강제당한 조약이었고 당시의 각료들이 만 2일간이나 이에 저항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를 저지할 힘이란 있을 수 없었다. 한국의 외교권을 완전 탈취함으로써 보호국화한 이 조약이 체결된 연후의 주한 외교관들의 태도는 이미 이와같은 조치에 대해서는 추측하고 있던 바로서 처음 놀라는 표정이 없었던 것이다.¹⁰⁾

비록 국왕과 신료들이 끝까지 굴하지 않았던들 한국의 보호국화가 저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한국정부의 형식적 동의가 필요했던 것은 포오츠머드 강화조약 제1조와 관련하여 회의록에 남긴 「향후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경우 한국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성명에 따라 이 약속이행을 위한 절차적 문제에 불과했던 것이다.¹¹⁾

돌이켜보면 보호조약 체결 이전에도 한국정부의 외교권은 일본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 1904년 8월에 체결된 한일협약서에 따라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가 외교고문에 기용되어 한국의 외교업무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스티븐스를 배후에서 조종하여 한국의 외교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일본은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 각국에 설치되어 있는 재외공관(在外公館)을 아예 폐지하도록 하였다.

한국정부는 결국 1904년 12월 14일 칙령을 내려 미국·청·독일·일본·프랑스 등에 주재하는 공관원들에게 철수를 명하였으며, 여권발급을 비롯한 제반업무는 현지의 일본영사관에서 대신 맡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정부의 외교권은 이때부터 일본에게 완전히 빼앗긴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보호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독립국가의

8) 「구한국관보」 1905년 12월 16일

9) 한국사, 11, op. cit., p.205.

10) 日韓外交資料集成 ⑥(上), p.6(日本ニ依ル韓國ノ外交關係引受措置ニ對スル各國公使及韓國大臣ノ態度ニ關スル件)참조

11) 류수현, op. cit., p.205.

일원이었다. 그러나 외교권을 위임하기로 한 을사보호조약의 체결과 동시에 한국은 독립국가의 지위를 잃고 한갓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일본의 요청에 따라 이어 각 국의 주한공사관이 철폐되고 외교관들이 철수함으로써 한국은 외부로부터 격리되고 말았다. 완전식민지화를 겨냥한 일본의 침략기도에 홀로 맞서야 하는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Ⅲ. 통감정치

보호조약체결에 성공한 일본은 후속조치로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를 제정하여 공포했다. 한국에 대한 보호통치의 실행기관으로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지방의 주요지점에는 이사청을 둔다는 것이었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이 규정을 통해 일본정부가 통감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강화시킨 사실이다. 을사조약의 규정에 의하면 통감은 일본정부의 대표자로서 한국황제 아래에 위치하여 한국의 외교에 관한 사항만을 관리하게 되어 있었다. 그 밖에는 지방에 주재하는 이사관들을 지휘하며 필요할 때 한국황제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을 따름이었다.

이처럼 통감의 역할을 주로 외교업무에만 한정시킬 경우 현실적 의미는 크게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았듯이 한국정부의 외교권은 보호조약체결 이전에도 이미 일본에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을사조약의 제 3조에서 “통감은 오직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실 일본의 본의가 아니었다. 원래 그들이 만들었던 초안에는 단지 “통감은 경성에 주재한다”고만 되어 있었다. 그것은 한국측의 매국대신들이 조약체결에 동의해 주면서 체면유지를 위해 이의를 제기한 탓에 수정된 결과였다. 즉 “통감은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구절을 명문화해달라는 요구에 우선 조약체결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일단 양보했던 것이다.¹²⁾

일본이 상당한 무리를 해가면서 까지 보호조약체결을 강요하고 통감을 파견하려 했던 의도가 문면상의 표현처럼 오직 한국의 외교만을 관리하려는 데 있지 않음은 분명하였다. 진정한 목적은 통감으로 하여금 한국의 내정까지 장악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을사조약을 통해 뜻을 이루는데 실패한 일본은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로써 끝내 이를 관철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통감에게 한국정부에 고용되어 있는 재정·외교·궁내부·군무·경무 등의 외국인 고문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 주었다.¹³⁾ 결국 일본은 통감을

12) 윤병석, 「일제의 한국주권 침탈과정」 『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1976, p.147.

13) 조선총독부, 「朝鮮の保護と併合」 1918, pp.26~31.

통해 한국의 내정까지 지배할 수 있게 된 셈이었다.

물론 한국에서 일본이 행사하는 영향력의 실질적인 배경은 일본군대가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는 현실자체에 있었다. 따라서 법적근거 여부가 본질적인 문제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외교만을 대행한다는 양국간 협정의 한계를 무시하고 통감이 한국의 내정에도 간섭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해 준 것은 역시 중대한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통감은 일본정부로부터 한국의 외교와 내정에 관한 업무일체를 위임받아 현지에서 침략정책을 수행하는 최정점에 위치하게 되었다. 통감에게는 그밖에도 주차군사령관에 대해 군대사용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 그리하여 통감은 일본정부 내에서도 수상에 버금가는 지위로 인정되고 있었다.

1905년 11월의 을사보호조약 체결로부터 1906년 2월의 통감부 설치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한반도에 보호국체제를 수립하고 통감정치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틀을 확립하였다.

초대통감으로는 추밀원의장 伊藤이 임명되었다. 총무부, 농상공부, 경무부를 비롯한 3부 16과의 중앙부서와 24개의 지방이사청(13개 본청, 11개 지청)으로 업무를 개시했다.

출범당시 통감부 본청의 일본인 관리는 절대적인 권한에 비해 극히 소수라 할 수 있을 30명 안팎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이내 한국정부의 각 부서에 포진한 고문들을 통해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친일관료들로 이루어진 한국정부 역시 별다른 불편없이 그들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¹⁴⁾

한국의 시정개선을 구호로 내걸고 통감에 취임한 伊藤은 3월 9일 고종을 알현한 자리에서, 앞으로 한국의 시정개선에 관한 급무는 자신이 한국정부 대신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다음 황제의 재가를 받아 행하겠다고 말했다.¹⁵⁾ 내정에도 직접 간여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것이었다. 그의 주재아래로 진행된 회의는 비록 법적 근거도 없었지만 통감정치 실시 과정에서 한국의 내정전반에 걸친 시정방침이 결정되고 세부 지침이 시달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¹⁶⁾

伊藤이 통감정치의 목표로 내건 시정개선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는지는 시정개선 협의회에서 그가 행한 발언을 통해 대강을 엿볼 수 있다. 한국정부의 일부 대신들이 교육의 진흥과 공업의 발달을 급선무로 제기한데 대해 그는 경찰력의 강화와 도로의 개선 그리고 농사개량 등을 주로 강조하였다.¹⁷⁾ 이는 한국민의 반일운동을 봉쇄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 외에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던 일본내의 식량 및 원료부족을 해결해야 하는 당면한 필요 때문이었다. 따라서 伊藤이 말한 한국

14) 한국사, 11, op. cit., p.208.

15) 金正明 편 『日韓外交資料集成』 6-上, 東京 巖南堂書店, 1964, pp.122~125..

16) Ibid., 6-上, 中, 下, 참조.

17) Ibid., 『日韓外交資料集成』 6-上, pp.127~162.

의 시정개선이란 실제로 일본 자본주의의 발달과 한반도 식민지화라는 그들 자신의 국가목표달성에 필요한 시책을 의미한데 지나지 않았다.

또한 伊藤은 한국의 시정개선을 위한다 하면서도 통감부 설치 후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재정개선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한국정부로 하여금 일본 흥업은행에서 1천만圓의 차관을 받도록 알선한 것이었다. 그리고 담보는 관세였고 이자는 년 6푼의 고리이며 구문전(수수료)만으로 백만원을 선불토록 했다. 더욱 이렇게 차관한 돈을 갖고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관청의 수리, 수도시설, 측량, 각종의 인건비 등에 충당하고 한국정부는 차용증서만 받았을 뿐 돈 한푼 구경도 못하였으니 그들의 파렴치한 허구를 입증하는 것이었다.¹⁸⁾

또한 그들의 식민지적 한국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1907년 5월 22일부터 25일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괴뢰내각을 재편성했다. 즉 참정대신에 이완용, 법무대신에 조중용, 내무대신에 임선준, 군무대신에 이병무, 탁지부대신에 고영희, 학부대신에 이재곤, 농공상부대신에 송병준이 임명되었다. 이 새로운 내각구성을 보게 된 동기는 그동안 각료들에 대한 국민들의 맹렬한 비난에 이기지 못한 박제순 이하의 전 대신들이 사의를 굳힌데서 발단하였는데 일진회측에서도 정부비난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伊藤과 이완용은 일진회의 정부공격을 무마하기 위해 송병준을 입각시킨 것이었다.¹⁹⁾

伊藤은 이와 같은 신내각을 편성하고 전 각료를 통감공관에 불러 혼시마져 하는 것이었다. 5월 30일 내각관제개혁에 따라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칭하고 참정대신을 총리대신으로 개칭하여 병합을 향한 보다 적극적 정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한편 伊藤은 한국민의 반발을 힘으로 억누르면서 국왕과 정부를 소멸시키려고 했으며,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목적인 병합을 이루기 위한 통감정치 of 핵심적 과제였던 것이다.

일본은 1907년 6월의 헤이그사건과 같은 적절한 기회가 포착될 때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정부와 국왕의 입지를 약화시키려고 하였다.

즉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반일적 태도를 갖고 있는 고종이 법률상 한국의 주권자인 국왕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일찍이 일본 총리대신이었던 가스라가 "한국황제 및 정부당국자들로 하여금 과실을 범하게 할 수 있다면 대한정책상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²⁰⁾

이 때 한국의 황실은 보호조약이 체결된 후 그것이 강제로 체결되었음을 외국에 알리려 노력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리 사절을 보내기도 했다.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이준, 이상설, 이위종 세 사람의 밀사도 그 가운데 하나였으나 회

18) Ibid., 「日韓外交資料集成」 ⑥ (下), pp.1103~1113.

19) Ibid., (上), pp.490~500.

20) 김용덕, 「대한제국의 종말」 「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1976, p.196.

의 자체가 '도둑들의 박람회'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 물론 영국 등의 집요한 방해에 부딪쳐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일본의 강요에 의해 고종이 퇴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²¹⁾ (1907. 7.20) 그리하여 伊藤은 고종의 축출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각 부서의 고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해 온 한국정부를 자신이 직접 지배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고종의 양위직후인 7월 24일 이완용이 이끄는 친일내각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른바 정미 7조약, 곧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였다.

일본정부 및 한국정부는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 조항을 약정함.

- 제 1조 한국정부는 시설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 제 2조 한국의 법령제정 및 중요한 행정처분은 먼저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 제 3조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구별할 것.
- 제 4조 한국 고등관리의 임명과 해임은 통감의 동의를 받아서 할 것.
- 제 5조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관리에 임명할 것.
- 제 6조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없이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을 것.
- 제 7조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한일협약 제 1항을 폐지할 것²²⁾.

정미조약을 통해 한국내정에 대한 통감의 지배가 시설개선에 관한 지도라는 명분으로 보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미 한국정부에 대한 간섭과 지시가 무제한 관철되고 있던 상황에서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다만 지금까지의 고문관 추천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일본인을 직접 한국정부의 관리로 보낼 수 있도록 한 사실 정도가 주목된다. 일본인 재정 고문의 채용을 의무화했던 한일협약 조항을 폐기한 것도 이제 는 그것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미조약의 핵심내용은 위의 공개된 본문에서가 아니라 伊藤과 이완용이 합의형식으로 비밀리에 첨부해 둔 각서속에 담겨 있었다. 여기에는 본문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한국군대의 해산 및 한국정부의 각부차관에 일본인 관리를 임명한다는 이른바 차관정치 구상, 그리고 경찰권과 사법권의 이양이라는 극히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점에서 정미조약은 매우 독소적인 내용을 기만적인 형식속에 담고 있는 셈이었다.²³⁾ 그리고 7월 27일에는 언론탄압을 위한 「新聞紙法」을 공포하고 7월 29일에는 집회결사를 금지하는 「保安法」을 발표하고 8월 1일에는 정미조약의 비밀합의에 따라 한국군대해산령을 발했다.²⁴⁾

21) 강만길, *op. cit.*, p.210

22) 「구한국관보」, 1907년 7월 25일

23) 한국사, 11, *op. cit.*, p.214.

24) *Ibid.*, p.214.

해산령은 한국 황제폐하의 詔勅형식으로 하고 해산이유는 경비절약이라고 하였다. 勅令의 내용을 요약하면 「①경비를 절약하여 厚生之業에 응용하며… 他日 징집법을 발표하여 공고한 병력을 구비코자 하여 황실 侍衛에 필요한 것을 選置하고 기타는 일시 해산토록 함… 짐은 장졸의 宿積之勞를 顧念하여 恩金을 頒與한다. ② 군대해산시 인심이 동요치 않도록 예방하고 혹 違勅 폭동자가 있으면 이의 진압을 통감에게 의뢰하노라」 하였다.²⁵⁾

伊藤과 이완용이 가장 우려 한 것도 해산령에 따른 한국군대의 저항이었다. 이 둘이 ②의 항목을 칙령으로 삽입한 것도 여기에 대한 조치였다. 伊藤과 한국주차사령관 長谷川好道대장간에도 한국군의 저항에 대비한 구체적 계획이 성립되어 있었다.

이완용은 제 ②항의 칙령에 따라 伊藤통감 앞으로 「혹 違勅 폭동자가 있으면 이에 대한 진압을 통감각하에 의뢰하고자 하는 대한제국황제폐하의 칙지를 奉承한다」 라고 하는 공문을 발송까지 한 것이었다.²⁶⁾

伊藤과 이완용에 의해 조작된 이와같은 연극으로 한국군의 항거폭동은 한국황제폐하의 칙령에 대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무자비한 일병의 진압도 또한 한국황제폐하의 칙령에 의한 것으로 조작했던 것이다. 이완용의 민족에 대한 주구적 배신행위는 이와같이 완전무결하였다.

당시 한국군은 서울에 주둔하는 侍衛隊가 약 4,000명, 지방각지에 배치된 鎮衛隊가 약 4,800명이었다. 일본군에 비할 수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무장역량을 가진 한국군은 이내 고종의 축출과정에서 보여 주었듯이 반일적 색채가 강하였다. 완전 식민지화를 목표로 하는 통감정치 과정속에서 한국군의 해체는 병합을 단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 두어야 할 과제였던 것이다.

8월 1일 서울의 시위대로부터 시작하여 일부지방의 진위대까지, 9월초까지 한달여에 걸쳐 진행된 군대해산 과정에서는 일본이 우려했던 것처럼 격렬한 저항이 따랐다. 그러나 최신병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밀린 한국군은 결국 해체 당하고 말았다. 이들은 생업을 찾아 사방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수는 민간인 의병대열로 들어가 반일전선의 일선에 합류하였다.

IV. 일제의 만주침략과 러·일협상

포오츠머드 강화조약에서 규정한 만주에 있어서의 일본의 이권을 청국으로부터 인

류수현, op. cit., p.209.

강만길, op. cit., p.211.

25) 류수현, Ibid., p.209.

26) Ibid., p.209.

정받기 위한 북경회담은 1905년 12월 22일 「만주에 관한 청·일 조약」의 조인으로 해결되었다. 이 조약에 의해 일본은 여순·대련의 조차권과 東淸철도 남부 지선의 부설권을 청국으로부터 승인받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남만주에 대한 독점적 경영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은 남만주에 대한 독점적 경영을 위해 그 중추기관이라 할 남만주철도회사를 1906년 11월 26일 설립하였다. 일본정부는 남만주 철도회사에 대해 주식배당이나 사채 원리금의 보중에 대한 보호책을 강구한다 하였고 그 대신에 滿鐵은 중요 업무에 관해서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도와 토지를 제공하는 업무를 부담한다는 특수한 관계가 규정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특수한 규정은 滿鐵이 일본의 만주침략을 위한 국책회사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즉 滿鐵은 철도부속지라는 명목으로 주변토지를 점거하여 침략의 발판을 확대시키기 위한 기관이었다. 철도부속지라는 노선주변의 부지 뿐만 아니라 정거장 주변일대의 시가지까지도 중요한 점거지가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침탈정책은 당시의 구미제국주의 열강들이 철도부설권이라는 이권을 취득하는 경우 의례히 행사하는 상투수법이었다. 따라서 철도부설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철도 노선상에는 수많은 치외법권적 소영토가 형성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 만철이라는 중추적 침략기관을 근거로 일본의 각종 기업을 남만주일대에 진출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1906년 11월 13일 後藤新平 만철 총재에게 수교된 각의 결정의 명령서에서 「만주에서의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橫濱正金은행과 자금공급에 당하고 있는 일본 흥업은행, 그리고 남만주 철도회사를 만주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경제기관으로 한다는 것과 이 삼자가 상호협력하여 만주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업을 가능한 邦人の 수중에 歸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기하고 있었다.²⁷⁾

이와 같은 조치는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강화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영국에 약속해 온 만주개방과 기회균등도 이내 그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고 만주에서의 이권을 독점코자 하는 일본제국주의의 탐욕적 성격을 노정하는 것이었다.

1906년 8월 1일에는 「關東都督府」가 설치되었는데 요동반도의 조차지에 대한 통치를 관장하는 민정부와 철도의 수비를 담당하는 육군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관동도독부의 설치하는 만주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군사적·정치적 체계의 구축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²⁸⁾

그리고 일본은 1907년 7월에 러시아와 제 1차 러·일 협약을 체결하였다. 러·일전쟁이후에 있어서 일련의 러·일협약체제의 형성이 가능하였던 기본조건은 전후 양국이 만주의 이권을 양분하게 된 사실에 있었던 것이다. 즉 러시아는 일본에게 남만주의 이권을 양보하기는 했으나 북만주를 횡단하는 東淸철도와 할빈-장춘간의 철도를

27) 古屋哲夫, 日露戰爭, (中央公論社, 東京, 昭和 41年), p.277.

28) 류수현, op. cit., p.215.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은 만주에 있어서의 기득권자로서 대등의 지위에 서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기득이권에 대한 도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양국은 공통의 이해관계에 입각하는 것이다. 만주의 기득이권에 대한 도전은 두 가지 방향에서 느껴졌던 것이다. 하나는 중국에서 점차 고조되어 가는 민족주의 운동이었고 또 하나는 열강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진출이었다. 이 두 방향의 도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상호의 인식이 일련의 러·일협약을 가능케 한 기본적 조건이었던 것이다.

1906년 11월 「국방방침」의 입안자였던 山縣有朋은 그 상주의견서에서 「장래라 할지라도 我國방상의 주요한 적은 노서아라고 상정되나 我이권을 청국에 대해 기도하는 경우, 청국의 저항을 러와 공동으로 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 바 있다.²⁹⁾

또한 1909년 5월 1일 山縣有朋은 수상에 취임한 桂太郎에게 「따라서 일면 노국과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상의 협정하에 청국에 대처해야 함은 금일의 형세에 있어서 가장 긴요한 일이다. 더욱 만주 경영이 한국지배를 위해서도 불가결한 것으로 만약 요동반도를 반환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보호국인 한국의 민심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니 극히 우려할 일이다」³⁰⁾라고 하였다.

한국지배라는 관점에서 러·일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한 자는 초대 한국 통감이었던 伊藤이었다. 그는 러·일협약을 위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한국문제 즉 병합문제를 협약의 중심문제로서 고려하도록 되풀이 하여 외상에게 요청했다. 1907년 3월 3일 제 1차 러·일협약을 위한 각의에서 「노는 일본과 한국간에 존재하는 政事上の 장래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협약의 주요 조항으로 포함시킬 것을 결정하였는데 伊藤은 러·일 상호간에 공문을 교환하여 “장래의 발전”이란 “annexation”까지 포함한다는 뜻을 상호간에 명백히 해두는 것이 득책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³¹⁾

이와같이 일본은 배타적인 만주경영과 한국의 병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러와의 제휴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 시기부터 일본의 침략정책은 여태까지의 한국에 대한 보호권확립으로부터 식민지로서의 병합 즉 영토화로 발전하고 한반도를 일본의 영토로 간주한데부터 출발하여 만주는 단순한 이익권이 아니라 식민지로서 간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성립된 1907년 7월 30일의 제 1차 러·일협약은 공표된 협정과 비밀협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표된 협정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협정의 골자는 비밀협정에 담겨져 있었다. 즉 공개 협정에서는 ① 러·일양국은 그 영토 및 여태까지 청국과 체결한 조약과 러·일간에 체결된 조약은 상호존중 한다는 것과 ② 청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인정하고 열국의 상공업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을 인정한다는 2개

29) 井上清, 日本の歴史(下), (岩波書店, 東京, 1970), p.91.

30) 古塚哲夫, op. cit., pp.232~233.

31) Ibid., p.234.

항목이었다. 그러나 청국의 독립이나 영토보전에 대한 인정이란 형식적 구호에 불과한 제국주의열강 공통의 상투적 장식이었고 열국의 상공업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에 대한 인정이야 말로 자가당착적인 기만술이었다. 이 협정의 중심적인 목적이 바로 열국의 상공업상의 진출을 저지하고 그들 자신의 독점적 이권확대를 꾀하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협약의 골자를 이루는 비밀협정에서는 ①전 만주지역을 양분하여 러·일양국의 이익분계선을 확정하였는데 그 이익분계선은 한국국경으로부터 장춘-할빈의 중간을 통해 만주대륙을 횡단하는 선으로 정하여 남반부를 일본의 이익권으로 하고 여타의 북반부를 러의 이익권으로 하는 것이었다. 철도 및 전신의 부설은 이 분계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규정되었다. ②러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정사상의 장래의 발전 즉 병합은 승인하고 일본은 외몽고에 대한 러의 특수 이익을 승인한다는 규정이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병합정책을 러로부터 승인받고자 하는 일본의 주장은 외몽고에 대한 러의 지배권을 일본이 인정하는 교환조건으로 달성되었던 것이다.³²⁾

한편 이러한 일본의 만주에 대한 탐욕적 자세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은 만주에서의 일본군정의 실시(관동도독부의 설치)는 만주에 대한 일본의 독점정책의 전주라고 판단하고 일본은 국제적으로 선언한 문호개방과 기회균등을 행하고 있지 않다고 항의를 거듭 제기하였지만 일본은 임시 변명만으로 사태를 호도할 뿐 사실상 이를 무시하고 만주경영의 기초작업에 전력을 경주하였다.³³⁾

한편 미국은 1909년 청국과 협의하여 영·미 자본으로 錦州 - 愛揮間의 철도부설을 위한 예비 협정을 설립시키고 동년 12월 18일 미국정부는 이 협정 성립을 공표하는 동시에 청국의 영토보전과 기회균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주의 전 철도를 청국의 소유로 하는 동시에 그 경영에 있어서는 관계 열국이 공동참여해야 한다는 소위 만주 철도 중립안을 제기했던 것이다.³⁴⁾ 이러한 미국측 제의는 철도를 중심으로 하여 만주의 식민지화를 계획하고 있는 러시아와 일본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협으로 반향된 것은 당연하였다. 미국측의 만주철도중립화안에 대해 러·일 양국은 이 제안을 거부하는데 공동보조를 취했다.³⁵⁾

러·일양국은 미국과 영국이 가하는 압력과 위협에 더욱 공고히 결속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해 1910년 7월 4일 제 1차 러·일협약을 더욱 보완하는 제 2차 러·일협약을 체결했다. 이 제 2차 러·일협약의 주요 골자는 ①러·일양국은 만주에 있어서의 철도경영에 있어서 우호적 상호협력력을 약속하고 일체의 상호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②비밀협정으로서 제 1차협약에서 이익분계선이라 하던 것을 정치적·군사적 권리까지를 포함하는 “특수 이익의 경계”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상대방의 특수이익권내에

32) 류수현, op. cit., p.218, 오기평, 세계외교사, 박영사, 1985, pp.287~288.

33) 古屋哲夫, op. cit., p.239.

34) 永井萬助, 明治大正史② 外交編, (朝日新聞社, 東京, 昭和 5年), pp.262~266.

35) 류수현, op. cit., p.219.

서는 어떠한 정치적·군사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³⁶⁾ 이 2차 협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병합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집중되었으며 이 협상의 성립으로 일본은 한국에 대한 행동의 자유권을 승인받았다.³⁷⁾ 그리고 양국은 상호협력하여 그들의 특수이익권에 제 3세력의 도전이 있을 경우 상호결속하여 이에 대응하겠다는 연합 결의를 확인한 것이었다.

만주개방을 열강 특히 미·영에 약속하여 그들의 직접적·간접적 원조를 받아 숙원인 한국 보호국화를 달성하고 만주를 이익권으로 획득하였던 일본이 이제 와서는 한국을 병합하여 그들의 영토로 삼고 만주를 이익권에서 독점적 식민지로 지배하기 위해 과거의 숙적이었던 러시아와 굳게 제휴하여 그들의 과거의 지원자를 배신하는 것이었다.

배신당한 영·미가 러·일의 만주독점정책에 보다 강경한 대응조치를 강구치 못한 주요 원인은 이미 당시 유럽에서 신흥독일의 급격한 세력 팽창으로 국제긴장의 초점은 극동으로부터 유럽으로 옮겨갔던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이미 이 당시는 소위 루즈벨트대통령의 후기 대외정책으로 필리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만주에 있어서의 일본의 야심에 양보를 했던 것이다.³⁸⁾

V. 병 합

이상과 같은 국제정세의 추세와 제 1차, 2차 러·일협상으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자유로운 처분을 러시아로부터 승인받고 어느 열강으로부터도 일언반구의 간섭도 없이 국제적 고아가 된 한국을 일본은 지체없이 병합시키는 절차를 강구하였던 것이다.

병합을 위한 모든 기초작업은 이내 완료하였기 때문에 가장 합법적 절차를 밟아 한국인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것처럼 날조된 수속을 취했던 것이다.

즉 1907년 10월 29일 이완용과 伊藤이 서명한 「경찰사무집행에 관한 取極書」, 1909년 7월 이완용과 제 2대 통감 曾彌荒助간의 「한국사법 및 감옥 사무위탁에 관한 각서」, 1910년 6월 24일 총리대신 임시서리 박제순과 제 3대 통감 寺內正毅간의 「한국의 경찰업무를 일본정부에 위탁하는 각서」 등은 한국정부가 형식상 갖고 있던 행정적 사법적 권한을 공식으로 통감부에 위양하는 절차였다.

1909년 7월 6일 일본정부 각의에서 결정된 「한국병합에 관한 건」을 보면 「한국을 병합하여 이를 我제국 판도의 일부로 함은 반도에 있어서 我실력을 확립하기 위한

36) 古屋哲夫, op. cit., pp.240~241.

37) 오기평, op. cit., p.291.

38) 류수현, op. cit., p.221.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 제국이 내외의 형세에 비추어 적당한 시기에 단연 병합을 실행하여 반도를 명실공히 我통치하에 두고 한국과 제 외국간의 조약을 소멸시키는 제국 백년의 장계인 것임」이라고 하였다.³⁹⁾

일본정부는 한일합방을 한국인 스스로의 발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절차가 바람직하다 생각하여 그들의 주구단체였던 일진회로 하여금 합방을 선창토록 하였다. 1909년 12월 4일 일진회(회장 이용구)는 백만회원을 대표한다는 명분에서, 한국황실에 올리는 「한일합방상주문」, 괴뢰내각 총리대신 이완용과 통감 曾彌荒助에 올리는 「한일합방청원서」, 그리고 한국국민에게 주는 「한일합방성명서」를 발표했던 것이다.

이 매국적 성명서가 발표되자 국민감정에 가한 충격이 너무나 커서 장안에는 살벌한 공기마저 일시에 팽배하여 배일감정은 더욱 격화되어 가기만 했다.

올사보호조약이래 국민들은 일제의 병합정책은 어느 때가 그들이 강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병합이 한국인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어처구니 없는 매국적 행위에 분격한 것이다. 일진회라는 허구적인 단체가 한국민의 증오의 대상임은 일본당로자들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사태가 예상외로 악화되어 놀란 그들은 일진회의 이러한 처사를 옹호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지나치게 노골적인 과잉충성이 빚은 역효과 병합직전의 불온상태를 더욱 자극하게 되었다는 것을 판단하고 이제 더 이상의 이용가치도 없는 일진회를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했다.

이리하여 12월 21일에 在경성 일본인 신문기자단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의 대륙낭인파 인물들과 일진회를 비난하여 책임을 전가시키면서도 한일관계의 근본적 해결인 한일합방의 당위성을 논하고 그 시기가 당도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⁴⁰⁾ 이리하여 한마디로 합방조치에 앞서 피해본 교활한 연출의 일막은 실패했던 것이다. 1910년 7월 23일 육군대신 겸 제 3대 통감으로 寺內正毅가 서울에 부임하기 전에 桂 수상으로부터 받은 대한 통치방침을 보면 1) 조선에는 당분간 헌법의 각 條章을 시행하지 않고 대권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2) 총독은 천황에 직속하여 조선의 일체 정무를 統轄할 권한을 소유함. 3) 총독에게 대권의 위임에 의하여 법률 사항에 관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4) 조선의 정치는 되도록 簡易를 주지로 함. 따라서 정치 기관도 또한 此旨에 의하여 改廢함. 5) 총독부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함. 6) 총독부의 政費는 조선의 세입으로 이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분간 일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본국 정부로부터 보충함. 7) 철도 급 통신에 관한 예산은 총독부 소관에 편입함. 8) 관세는 당분간 현행대로 함. 관세는 총독부의 특별회계에 속함. 9) 한국은행은 당분간 현행조직을 變改치 않음. 10) 병합 실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금액을 정하여 예비금에서 이를 지출함. 11) 통감부 및 한국정부에 재직중인 일본 관리중 무용한 자는 귀환 또는 휴직을 명함. 12) 조선에 있어서 관리 임명에는 그 계급에 따라 되도록 많

39) 日韓外交資料集成 ⑥(下), 문서번호 240, pp.1254~1256(각의결정) 참조.

40) 류수현, op. cit., p.226.

은 조선인을 채용한다는 방침을 취함. 41)

1910년 8월 16일 寺內正毅는 통감관저에서 이완용과 합방의 구체적 절차를 밀의하여 동월 18일 이완용으로 하여금 어전회의에서 합의절차를 밟도록 하였다. 8월 22일 이완용이하의 각 대신들은 우둔한 순종을 앞에 앉히고 형식상의 어전회의를 거쳐 즉일로 이완용과 寺內는 합방조약에 조인하였다.

VI. 결 론

일본은 명치유신 이래 집요하게 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정책을 시행해 나갔다.

드디어는 그들의 목적달성에 장애가 되는 청국과 러시아와 전쟁을 감행한 후에 승리를 거두어 더욱 한국을 식민지화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갔다.

그리하여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박탈한 다음에 통감정치를 통해 식민지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이루었다. 그리고 헤이그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이어 정미조약을 통해 한국군대를 해체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러·일전쟁 당시의 적국이었던 러시아와 밀약을 맺어 한국의 병합에 대한 국제적인 반대세력을 없애고 심지어는 만주 마저도 식민지화하기 위해 이전의 동맹국인 영국이나 나아가 미국 마저도 배신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국내외의 여러 가지 장애를 없앤 다음 친일파세력을 이용하여 한국을 병합하고 말았다.

한국은 국내적으로 봉건체제를 탈피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무능했으며, 국론분열·친일파의 준동으로 국력이 쇠약할대로 쇠약한 가운데 국제적으로 강대국의 비밀외교에 어두운 가운데 망국의 설움을 맛보게 되었다.

냉혹할대로 냉혹한 국제정치에서 생존하는 길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강력하기 위한 정치적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41) 日韓外交資料集成 ⑥(下) 문서번호 263. pp.1396~1397.